

공 고

◎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-030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3월 26일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1. 법적근거

-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(이의제기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2. 행정처분 대상

번호	대상자	법인/주민 등록번호	주소	처분금액	법령 위반사항	광고 전화번호	광고내용
1	주식회사 **라이팅	170111- 0578***	대구 달서구 와룡로	375만원	정보통신망법 제50조	010-**-26- 9009	조명기구 판매
2	**엔씨 주식회사	170111- 0626***	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	375만원	정보통신망법 제50조	053-**-2-22 00	부동산
3	서*규	790227- *****	대구시 남구 두류공원로	375만원	정보통신망법 제50조	010-**-38- 4444	종합광고
4	공*복	690707- *****	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	375만원	정보통신망법 제50조	010-**-05- 8292	중고차

3. 게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4. 이의제기기한 : 공고문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

5. 납부기한 : 2020. 05. 25.(월)

6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,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.

- 건명 :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
- 수입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(과태료)
- 산출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
- ※ 체납 시 과태료에 3%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.2%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7. 이의제기제출 장소 :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8층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
【(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, 807호(초량동, KCA빌딩) (☎ 051-967-1203, 1206 FAX : 051-967-1208)】